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0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박영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유정인, 윤기섭, 이병도,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 심리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고립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 이에 고립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고립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실무조사 의무화를 추가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다. 지원사업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라. 지원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09
----------	------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박영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유정인, 윤기섭,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심리·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고립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 이에 고립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고립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실무조사 의무화를 추가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다. 지원사업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라. 지원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6.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제2항의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u>"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7조(실태조사 등)</p> <p>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u>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u></p>	<p>제7조(실태조사 등)</p> <p>① _____ _____ _____ _____ <u>——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원사업)</p> <p>① (생 략)</p> <p>1. ~ 5. (생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8조(지원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① <u>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① <u>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6.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및 <u>지원사업 홍보</u>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삭 제></p>
<p><신 설></p>	<p><u>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